

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(긴급)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제10조, 「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-44호)」에 의거 「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」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5.

고 성 군 수

1. 용역사업 집행계획

- 가. 용역명 :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
- 나. 시행기관 : 경상남도 고성군
- 다. 주요내용 : 과업지시서 참조
- 라.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18개월
- 마. 용역금액 : 금1,908,200,000원(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)
- 바. 입찰예정시기 : 2026년 10월 중 (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 - ※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,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.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

가. 참가자격

- 1) 공고일 현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.
- 2)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[종합 또는 설계·사업관리 (일반 또는 설계등용역)]으로 등록한 업체
- 3) 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」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

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(등록)를 필한 업체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

- 건설부문: 수자원개발, 토질·지질, 상하수도, 구조, 항만·해안

- 3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)로 등록한 업체

나. 공동도급

- 1)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(공동이행방식)으로 참여 가능하며,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.(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최소 분담비율은 5% 이상)

-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,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.

※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%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

- 2)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3.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

- 1)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: 국가종합전자조달(나라장터)(<http://www.g2b.go.kr>)

- 2) 참가등록마감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: 2026. 9. 30.(수) 10:00 ~ 17:00 까지

※ 상기 서류제출 일시 외에는 무효처리함

- 3)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

① 등록 장소 : 고성군 안전관리과

② 등록 방법 :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(우편, Fax, E-mail,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)

- 4) 제출서류

① 참가등록 서류 1식 :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(공동도급의 경우),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대리인 참석 경우), 사용인감계,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

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: 1부(회사대표 공문서)

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: 2부(원본 1부, 사본 1부)

④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: 7부(별권 제출, 원본 1부, 사본 6부) ※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

⑤ USB 1개 : 상기 4) 제출서류 중 ③항 및 ④항 PDF파일, 업무중복도 한글파일

4. P.Q 평가,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

가. PQ평가 기준 및 방법

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8조에 의한 「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 (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-44호)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항목 등 평가 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.
- 2) 입찰참가업체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**일정점수(87.50점) 이상을 취득한 업체**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,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. (※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)

나.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

- 1) 낙찰자 결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 “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” [별표 1]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(P.Q)를 하는 기술용역에 의해 결정합니다.
- 2) 적격심사 세부기준
 -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,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.
 - P.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,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.
 -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,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.
 -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**배점한도를 부여**합니다.

5. 기타 유의사항

- 가. 참가등록은 업체대표 또는 대리인(재직증명서 첨부)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인감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나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배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.
- 다.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(서식순)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참가등록 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라. 평가서는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며,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며,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,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- 마.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,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바.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「기술사법」 제5조의7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

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자격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 (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, 평가 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)

- 사.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, 평가서에 포함된 관련 협회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고,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우리 군 평가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입찰유의서, 계약 일반조건,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,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,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자.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(충점)하며,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.
- 차.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,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카. 용역비, 용역기간 및 입찰 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타.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- 파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안전관리과(☎055-670-25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문의 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고성군 안전관리과(Fax : 055-670-2509)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.